

# 현장조사 안전매뉴얼

2018. 12.





## Contents

I 안전과 사고의 이해	1
II 안전한 통계조사를 위한 기본 사항	2
III 안전사고 유형별 예방법 및 대처요령	4
IV 조사 대상처에서의 안전수칙	8
V 현장조사 직원 보험 가입	12
VI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조치	13
VII 안전사고 관련 재해보상 처리절차	14
VIII 기타 안전관련 정보	18

# 안전과 사고의 이해

## 1 안전의 개념

### ○ 사전적 의미의 '안전'

- ◎ 위험하지 않은 것. 마음이 편안하고 몸이 온전한 상태

### ○ 일반적 의미의 '안전'

- ◎ 사고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인간의 행동을 수정하거나 물리적으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한 조건이나 상태

## 2 사고의 개념과 원인

### ○ 사고의 개념

- ◎ 일반적으로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불안전하게 형성된 습관과 행동으로 예기치 못하게 발생된 상해'를 뜻함

### ○ 사고의 원인

- ◎ (인적 요인) 연령, 성별 특성, 태도 및 심리적인 상태, 행동특성 등
- ◎ (물적 요인) 비행기 엔진 고장, 자동차 기계적 결함 등
- ◎ (환경적 요인) 도로 사정, 날씨 등

# 안전한 통계조사를 위한 기본 사항

1

## 안전용품 및 조사용품 준비

- 조사 전 안전한 조사수행을 위해 안전용품 및 조사용품을 철저히 준비



2

## 담당조사구 확인

- 조사구의 지형, 주택 배치 형태, 개를 기르는지 여부, 교통량, 경찰 지구대, 파출소 등을 확인



3

## 방문위험지역 사전 파악

### ○ 시골지역의 경우

- 이장을 통해 남자 독거가구, 남자들만 사는 가구, 마을에서 떨어진 가구(가축농장, 개 사육장 등) 등 위험우려 지역 사전 파악
- 가급적 야간조사를 피하고, 부득이 야간조사를 실시하게 되면 이장이나 마을 자율 방범대 등의 도움을 받아 동행하여 조사 실시



### ○ 도시지역의 경우

- 경찰지구대나 파출소를 통해 범죄 발생 및 우려지역 등을 미리 확인, 특히 이웃 주민들과 교류가 없는 남자 독거 가구는 반드시 동행하여 조사 실시





## 4

## 비상연락처 확보

- 조사 중 긴급 상황 발생 시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연락처(사무실, 인근 경찰지구대, 파출소 등) 메모, 필요시 즉시 연락
- 개인 휴대폰에 비상연락처 입력



## 5

## 본인 일정 공유

- 조사 당일 방문 일정을 가족 및 지인에게 알림
-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알리고, 야간 조사 시에는 당직자에게도 사전에 일정을 알림



## 6

## 조사활동에 적합한 복장 및 신발 착용

- 조사활동에 적합한 의상과 신발 착용
- 지나치게 화려한 의상 및 화장, 종교·사회단체 배지(마크) 부착은 피하도록 함



&lt; 올바른 복장 &gt;

## 7

## 조사관련 서류가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

- 조사관련 서류(조사표, 가구명부, 필수품 등)를 분실하지 않도록 항상 휴대하고, 특히 조사 완료된 조사표는 주의를 기울임(날치기 주의)

# 안전사고 유형별 예방법 및 대처요령

## 1

### 교통사고

- 몸에 맞지 않는 자전거는 피하고, 우천 시에는 자전거 및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지 않음
- 차량 이용 시 교통사고가 많은 교차로나 좁은 골목에 유의하고, 야간 및 우천 시에는 속도를 줄여 안전운전을 하도록 함
- 좁고 불규칙한 농로 대신 안전한 길로 우회
- 저녁 및 야간조사는 특별히 주의
  - ◎ 부득이 야간조사를 하게 될 경우 어두운 색의 복장은 피하고 눈에 잘 띠는 밝은 색의 복장 착용
- 교통사고 발생시 '비상등으로 주변에 사고발생을 알려 2차 사고 방지 - 사고현장 및 자동차 파손부위 사진촬영 - 보험회사에 연락 - 사고발생상황 소속기관에 알림' 순으로 조치
 

※ 인명피해 발생 시 즉시 119에 구호 요청, 사고유발차량 도주 등의 상황 발생시 112에 신고





## 2

## 낙상사고

- 도로의 높낮이, 구덩이, 하수구 등에 주의
- 급한 경우에도 계단을 오르내릴 때 주의하며, 비가 올 때나 야간에 미끄러져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특히 주의
- 계단이 많은 지역이나 비오는 날은 바닥이 미끄러운 재질의 신발 착용을 피하여 계단에서 넘어짐 예방
- 야간조사시 휴대용 조명기구를 이용하여 시야확보
- 출혈 시 수건이나 얇은 천으로 압박 지혈 후 출혈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유지한 채로 주변이나 119에 도움을 요청



### 3

### 성추행·성폭력 및 폭력 등

#### ○ 상대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상대의 동작에 주의

- ◎ 면접조사를 할 때에는 응답자와 일정한 간격 유지
- ◎ 면접 중에 상대방의 태도 또는 동작을 잘 살펴 이상한 행동을 할 경우 등에는 조사를 중단하고 날짜를 바꾸어 방문



#### ○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

- ◎ 조사 시에는 공손하고 부드러운 태도와 분명한 말로 조사를 진행하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말과 행동은 삼가
- ◎ 문이 열린 상태에서 잠시 외출 중인 집에 들어가 도난 등의 오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

#### ○ 불안감을 느낄 때에는 되돌아 가도록 함

- ◎ 정신 이상자, 혹은 술에 취해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면접 도중 불안감을 느낄 때에는 조사를 중단하고 되돌아 가도록 함



### ● 성추행, 성폭력, 폭력 위험 발생 시 대처요령

- ◎ 1. “불이야” 등 큰 소리를 여러 번 외치고, 안전용품으로 지급된 호신용 경보기를 사용하여 주변에 위험 발생 상황 알림
- 2. 위험 지속 시 호신용 스프레이 사용 등을 통해 위험지역에서 빠져나온 후, 즉시 ‘원터치 SOS’\*나 ‘112긴급신고 앱’\* 혹은 직접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사무실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상황에 따라 순서 변경 가능)
  - \* 'VIII. 기타 안전관련 정보 - 2. SOS 국민안심 서비스' 참고
- ◎ 호신용 경보기와 스프레이는 사전에 사용방법을 충분히 숙지하고, 목에 걸거나 가방 고리에 연결하는 등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



## 4

### 개물림

#### ● 개를 기르는지, 개가 줄에 연결되어 있는지, 개 줄의 길이 등을 확인

- ◎ 개를 기르고 있는 곳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벨을 누르거나 문을 열 때에도 주의함

#### ● 불필요하게 개를 만지는 행위 삼가

- ◎ 실내에서 주인과 함께 있어도 머리를 쓰다듬거나 안아주는 등 불필요한 접촉은 삼가야 함

#### ● 주인에게 연락을 취해 위기상황 모면

- ◎ 현관 밖의 개가 심하게 짖거나 달려드는 경우 주인에게 연락한 후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려 주인의 도움을 받아야 함



# 조사 대상처에서의 안전수칙

## 1

## 가구 방문 시 안전수칙

- 가구방문은 가능한 한 낮 시간에 원료
  - ◎ 부재가구의 경우 조사 방문통지서나 이웃주민 등을 통해 조사 가능 시간을 파악하고, 가급적 낮 시간대에 방문
  - ◎ 부득이 야간에 방문해야 할 경우 어두운 도로나 인적이 드문 길을 피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2인 1조 동행 출장 실시
- ▶ 조사는 현관에서 실시
  - ◎ 부득이 집안으로 들어갈 경우, 방에는 절대 들어가지 말고 현관문을 열어둔 채 조사를 마침
- 조사직원증 또는 통계조사원증 제시
  - ◎ 먼저 조사직원증 또는 통계조사원증(도급 조사원)을 제시하여 통계청 현장 조사원임을 명확히 전달
- 적절한 방문 시간 선택
  - ◎ 너무 이른 시간이나 늦은 시간에 방문하여 가구에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하고, 상가지역 가구를 방문할 때는 혼잡한 시간을 피함
  - ◎ 부득이 전화를 할 경우에도 적절한 시간을 선택
- 예의바른 태도를 갖춤
  - ◎ 고압적인 말투, 음주 후 방문, 정치·종교 등에 대한 불필요한 대화는 피하도록 함
  - ◎ 응답자의 언행이 다소 불쾌하더라도 화내거나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도록 함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조사 시 관리인에게 알림
  - ◎ 관리사무소의 안내방송 협조 요청을 통해 통계청 현장조사 직원이 방문하게 됨을 알림
- 조사 수행 중 영업행위나 종교 활동 금지
  - ◎ 조사 수행 이외의 방문판매 행위나 종교활동, 사회단체활동 등을 하여 응답자에게 거부감을 주어서는 절대 안됨

## 2

## 사업체 방문 시 안전수칙

- 안전한 장소에서 조사
  - ◎ 공장이나 작업장 등에는 가동 중인 기계, 쓸어올린 자재, 위험한 약품류 등이 있으므로 피함
- 적절한 방문 시간 선택
  - ◎ 방문하는 사업체가 혼잡한 시간을 미리 파악하여 피하도록 하고, 개점 전 등 비교적 한가한 시간에 방문



### 3

### 농·어업 관련 대상처 방문 시 안전수칙

#### ● 벌에 쏘이거나 벌레·뱀 등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

- ◎ 긴 소매 옷을 착용하고, 화려한 색의 옷보다는 어두운 계열의 옷을 착용
- ◎ 장화, 작업화, 모자, 장갑 등을 착용하여 신체노출 최소화
- ◎ 향수나 스프레이와 같은 향이 강한 화장품은 사용하지 않음



#### ● 농가 방문 시 야생동물 퇴치를 위해 설치된 덫이나 전기 울타리 등에 주의

- ◎ 고압주의 표지판 등을 미리 확인하여 사고 예방

#### ● 어선에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

- ◎ 어선을 이용하여 양식장 등 대상처 방문 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자리에 앉아 안전하게 이동





## 4

## 안전 확보가 필요한 대상처에 대한 단계별 안전대책

- (1단계) 면접조사를 비대면조사로 대체
  - ◎ (대체사유) 대상처 방문으로 조사직원 안전에 위협을 받을 경우
  - ◎ (대체절차) 소속 부서장 서면보고 및 결재 후 조사담당 실사과에 통보
- (2단계) 표본 대상처 교체
  - ◎ (교체사유) 안전 확보가 필요한 대상처에 대해 비대면조사가 가능하지 않을 경우 등
  - ◎ (교체절차) 공문 또는 메모보고로 표본과에 교체 요청
- (3단계) 2인 1조 동행 출장
  - ◎ (전제조건) 안전 확보가 필요하나 비대면조사 또는 표본교체가 불가능한 대상처에 대해 부득이 현장조사를 수행해야 할 경우
    - ▶ 2인 1조 동행 출장 시 업무량 증가 등으로 인한 직원 부담을 고려하여 실시
  - ◎ (운영방법) 2인 1조 동행 출장이 필요할 경우, 각 지방청(사무소)별 예산범위 내에서 자치적으로 시행
    - ▶ 지방청(사무소)에서는 경찰관의 원활한 협조를 얻을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와 사전에 협의 필요
    - ▶ 범죄 발생 가능성이 현저한 고위험 조사대상처를 방문할 경우 반드시 경찰관이나 남자 직원과 2인 1조로 동행 출장



# 현장조사 직원 보험 가입

## 1 공무원 및 공무직

○ 가입보험종류 :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추진하는 맞춤형복지 단체보험

- ◎ 단체보험가입이 결정된 상품은 전 직원 필수 가입
- ◎ 단, 본인입원의료비, 본인통원의료비, 가족(배우자, 자녀)  
입원의료비는 실손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면제 가능



○ 가입대상자 : 공무원 및 공무직,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

## 2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 가입보험종류

- ◎ 1개월 이상 :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 ◎ 1개월 미만 : 산재보험, 고용보험
- ※ 공무원은 산재보험법, 국민연금법 대신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으며,  
고용보험은 가입대상에서 제외



○ 가입대상자 : 공무직 및 연간·특별조사 총관리자, 조사관리자, 업무보조원 등

## 3 도급계약 조사원

○ 가입보험종류 : 일반 상해보험 등 1인 1보험 의무가입

○ 가입대상자 : 도급계약 조사원

- ◎ 도급계약으로 수급자(조사원) 부담으로 계약체결, 계약기간 동안 기존 보험사에 가입  
(담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가입 불필요

#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조치

## 1

## 사고나 부상 등 안전사고 발생

- 사고나 부상 시에는 즉시, 사고수습에 필요한 응급 조치 (119, 112, 보험회사 등에 연락) 실시
- 사고 발생 상황(일시, 장소, 부상정도 등)을 본인 소속기관 (지방청·사무소)에 신속하게 보고
  - ※ 사고 및 부상 정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 및 조치



## 2

## 안전사고 처리절차



안전사고발생  
(사고, 부상, 질병 등)



응급조치  
(119, 112, 보험회사 연락)



상황보고  
(소속기관 : 지방청·사무소)



재해보상처리 신청  
(보험금, 재해보상여, 산재보상 등)



# 안전사고 관련 재해보상 처리절차

## 1

## 공무원

- 재해보상급여 :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질병·부상·장애·사망하였을 때 국가가 보상적인 차원에서 지급
- 재해보상 처리기관 : 공무원연금공단
- 재해발생 유형별 지급액



공무원연금공단  
재해보상

## 부상·질병

- 공무상 요양비
  - 실제 요양기간 범위 내 지급

## 장애

- 장해연금
  -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장애학정 및 퇴직시 장해등급(1~14급)에 따라 기준소득 월액의 52%~9.75%
- 장해일시금 지급
  - 장해연금액의 5년분 일시지급
    - ※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중 본인이 선택하여야 하며, 퇴직급여와 병급 가능

## 사망

- 순직유족보상금
  -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사망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 지급
- 순직유족연금
  -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사망시, 사망 당시(퇴직 후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38% + 유족 1인당 5%
    - ※ 순직유족보상금, 순직유족연금 중 선택
- 사망조위금
  - 공무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이 사망하거나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조적 차원으로 지급하는 급여. 급여서유 발생일(3년)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3년이 경과하면 소멸
    - ※ 순직유족보상금이나 순직유족연금과 병급 가능



## ○ 세부 처리절차

### 청구인

- 소속기관(동계청)에 재해보상급여 지급 청구
  - 공무상요양승인신청, 장해급여청구, 유족보상금청구 등

### 연금취급기관 소속기관(동계청)

- 급여유형별 구비서류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서 이송
  - 상병, 장애, 사망경위조사서 등 작성하여 첨부

### 공단

- 공무상재해 승인여부 결정 및 급여지급

※ 자세한 내용은 공무원연금공단 재해보상 홈페이지 참조

## 2

##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연간·특별조사 종관리자, 조사관리자, 업무보조원 등)

- 산업재해 :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

- 산재보상 처리기관 : 근로복지공단

- 세부 처리절차

- ◎ (1단계) 재해 당사자는 '공단이 설치 또는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진료 후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 병원, 사업장(지방청·사무소)에 각각 제출
- ◎ (2단계)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재해여부를 확인하여 7일 이내에 요양 승인여부를 재해 당사자와 사업주, 병원에 각각 통지하게 됨
- ◎ (3단계) 업무상 재해 승인이 확정되면 재해 당사자는 휴업급여 및 산재 장해 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휴업급여 산정에 필요한 임금 대장 등 관련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 ○ 산재보상의 종류

구분	제 급 가 전
요양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양급여는 병원비를 말하며, 공단이 설치 또는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고 비용을 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것이 원칙임. 단,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요양을 먼저 하고 진료를 부담한 경우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li> <li>· 산재보험요양급여 산정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비급여 항목 등 일부 본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li> </ul>
휴업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입원/통원)에 대하여 1일당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li> </ul>
장해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정신적 또는 육체적 장해가 남아 장해급여 지급대상에 해당될 경우 장해등급에 해당되는 지급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지급</li> </ul>
간병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치료가 끝난 후에도 간병인이 필요하여 간병이 실제 행하여지면 그 장해정도에 따라 간병비용을 지급</li> </ul>

※ 산재보상관련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공무원이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

## 3

## 도급계약 조사원(연간·특별조사 조사원)

- 보험금 청구 범위 : 조사업무 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
- 보험 처리기관 : 조사원이 가입한 일반 보험사
- 세부 처리절차
  - ◎ (1단계) 입원이나 통원치료 후 치료비 지급내역 확보
  - ◎ (2단계) 보험사가 제공하는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치료비 영수증과 필요에 따라 특별검사(MRI, CT, 의사 소견서 등) 진료 확인서를 같이 첨부하여 보험사로 통보



# 기타 안전관련 정보

## 1 긴급전화번호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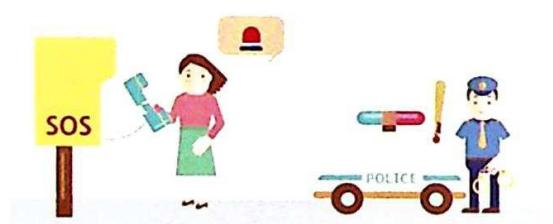
### 긴급전화번호

전화번호	접수내용	상세 내용
112	범죄신고	• 신속한 범죄 신고 및 출동 관련
119	화재·구조·구급·재난신고· 응급의료·병원 정보	• 소방·화재·구조·구급 등 모든 재난 신고 • 18개 시·도 소방본부 또는 중앙 119 구조대로 내용 전달
1366	여성긴급전화	•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등으로 긴급한 구조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여성을 대상, 24시간 Hot-line 운영
182	경찰민원상담	• 각종 경찰서 관련 문의 및 민원

※ 응급의료정보 상담·안내번호 1339는 119로 통합·일원화 됨

### 특수번호

전화번호	접수내용	접수번호	접수내용
111	안보상담신고(구113)	118	사이버테러
122	해양 긴급 신고	125	밀수·사범 신고
1301	마약·범죄종합신고	1337	군사기밀·간첩·방산스파이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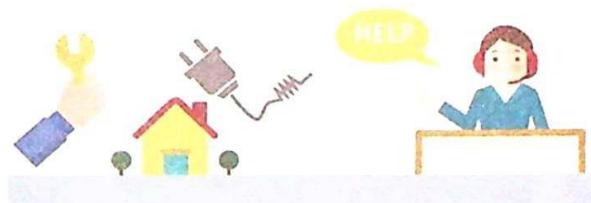


## ○ 생활정보

전화번호	접수 내용	전화번호	접수 내용
114	전화번호 안내	116	표준시각 안내
120	생활민원센터	02-120 032-120 031-120 051-120	서울 다산콜센터 인천 미추홀콜센터 경기 경기도콜센터 부산 바로콜센터
131	일기예보 안내	1333	교통정보안내

## ○ 공공 · 민원안내

전화번호	접수 내용	전화번호	접수 내용
110	정부통합 민원서비스	132	법률 상담
123	전기 고장 신고	1331	인권침해 상담
1544-4500	가스 사고 신고	1398	부패 신고
118	개인정보침해 상담	1588-7500	전기 안전 상담
1399	부정 · 불량식품 신고		



## 2

## SOS 국민안심 서비스

## ○ 서비스 개요

- 위급한 상황에서 휴대폰, 스마트폰, 전용단말기를 이용한 말없는 신고를 통해 신속하게 112 신고센터(또는 보호자)에 긴급 상황과 신고자 위치 정보를 제공하여 범인 검거 또는 신고자 구조가 가능한 시스템



## ○ 가입대상

- 전국의 모든 미성년자와 여성

## ○ 가입 방법 및 사용법

- (원터치SOS)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에서 가입한 후 휴대폰 또는 스마트폰에 112를 사용하기 편리한 단축번호로 저장
  - \* 위기상황 시 단축번호를 눌러 신고





- ◎ (112긴급신고앱) 통신사별 앱 마켓에서 경찰청이 제작한 112긴급신고앱을 다운로드 하여 본인 인증 후 가입
  - ▶ 긴급 문자신고, 긴급 전화신고 시 112 종합상황실에 인적사항, 위치정보가 자동으로 전송
    - \* 위기상황 시 단축번호를 눌러 신고



- ◎ 112긴급신고 앱 주요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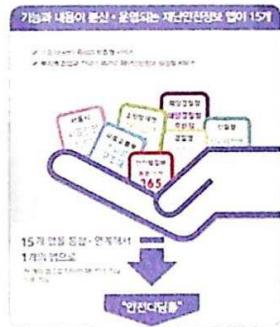
## 4 정부대표 재난안전정보 포털 앱 「안전디딤돌」

### 서비스 개요

- 정부대표 재난안전 포털 앱으로 재난발생시 또는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다양한 재난안전 정보를 제공
- 긴급재난문자, 재난뉴스 및 재난신고, 민방위대피소, 병의원 등 시설물 위치, 유형별 콘텐츠 등 다양한 정보를 하나의 앱으로 서비스
- 특히, 지진 등 재난유형별 국민행동요령은 통신이 두절되어도 언제 어디서나 사용 가능



행정안전부  
안전디딤돌



### 안전디딤돌 주요 화면



〈 메인화면 〉



〈 재난안전 콘텐츠  
맞춤 설정 〉



〈 재난문자 수신/  
재난뉴스 〉



〈 재난 유형별 국민  
행동요령 〉

##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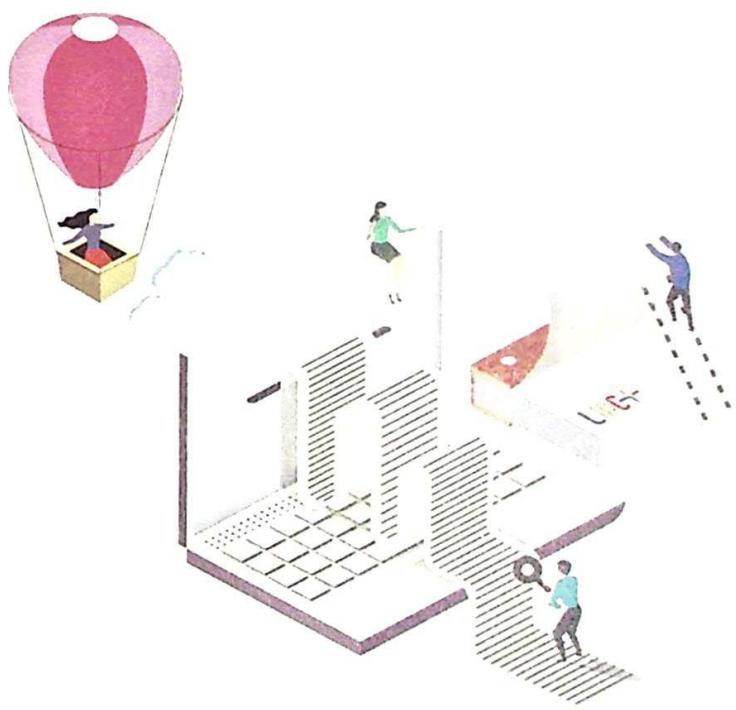
## 경찰서 업무 협조 공문 예시

## ○ 관할 경찰서 또는 지구대 협조 공문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통계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정책수립 및 평가와 분석·연구의 기반이 되는 다양한 분야의 국가 기본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하지만, 최근의 사생활보호 의식의 확산, 1인·맞벌이 가구 증가 등으로 조사 환경은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더구나 원룸, 오피스텔, 고시원 및 공장밀집 지역, 불법체류 외국인 및 노숙자 거주지역 등에서 조사직원의 신변을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4. 이에, 귀 경찰서 관할인 ○○지방통계청(○○통계사무소)의 통계청 조사직원이 위험한 조사대상처 방문 시 동행 협조를 요청 드리오니, 소속 경찰관의 업무 지원을 통하여 통계조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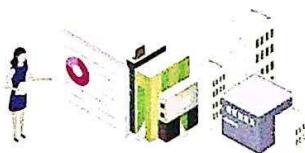
## [첨부] 통계청 통계조사 소개

- \* 지방청(사무소)에서는 관할 경찰서(지구대)와 부서장간 간담회 등을 통해 업무 협조에 관해 사전에 협의한 후 공문 발송 요망





## 현장조사 안전매뉴얼



통계청  
Statistics Korea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kostat.go.kr](http://kostat.go.kr)